

광주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단5286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주은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1. 1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D와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2 기재 금전 증여계약을 25,7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1 기재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2,75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별지 2 기재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22,9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는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996. 12. 7. 주식회사 F로부터 136,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F의 채권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유한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에 순차로 양도되었다.

나. L 주식회사는 D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16069호로 'D는 L 주식회사에게 106,339,72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5. 5. 5.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L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양수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위 승계집행문은 2020. 3. 17. D에게 송달되었다.

라.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9. 9.부터 2020. 7. 29.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의 별지 1 기재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별지 2 기재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딸인 피고 앞으로 별지 1, 2 기재와 같이 합계 25,7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1, 2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D는 합계 25,7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D의 피고에 대한 위 각 금전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7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D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것이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D에게 교부하였고, D가 위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면서 이를 관리해 온 사실, D는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입금한 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진료비, 생활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D가 피고 앞으로 별지 1, 2 기재와 같이 합계 25,7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D와 피고 사이에 그 각 금원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1 기재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별지 2 기재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위 각 예금계좌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예금계좌는 채무자인 D 명의의 계좌인바, 피고와 D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써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별지1]

피고와 소외 사이에 체결된 금전증여약정의 내역소외 우체국 계좌

순번	일 자	금 액
1	2019-05-31	390,000
2	2020-02-26	400,000
3	2020-03-30	390,000
4	2020-04-24	390,000
5	2020-05-25	400,000
6	2020-06-26	390,000
7	2020-07-29	390,000
	합계	2,750,000원

[별지2]

피고와 소외 사이에 체결된 금전증여약정의 내역소외 우체국 계좌

순번	일 자	금 액
1	2016-09-09	750,000
2	2016-10-14	700,000
3	2016-12-15	900,000
4	2017-01-06	400,000
5	2017-01-19	400,000
6	2017-07-14	1,000,000
7	2017-08-14	1,100,000
8	2017-09-18	700,000
9	2017-10-16	1,000,000
10	2017-11-15	800,000
11	2017-12-15	1,000,000
12	2018-01-15	1,000,000
13	2018-02-09	700,000
14	2018-03-15	1,000,000
15	2018-04-13	1,000,000
16	2018-05-15	1,000,000
17	2018-06-16	1,000,000
18	2018-07-16	1,000,000
19	2018-08-14	900,000
20	2018-09-14	1,000,000
21	2019-01-16	500,000
22	2019-02-15	500,000
23	2019-03-15	500,000
24	2019-09-11	500,000
25	2019-10-15	500,000
26	2020-01-18	500,000

27	2020-02-14	500,000
28	2020-03-23	1,000,000
29	2020-04-17	300,000
30	2020-05-20	300,000
31	2020-06-22	500,000
	합계	22,950,000원

